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220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조인명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경기 연천군 C 전 364㎡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20. 1. 20. 접수 제12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5. D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31,836,829원으로,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E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15.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2020. 6. 9. 주식회사 E에 31,836,829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지급한 금액에 상응하는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D의 아들로, 2020. 1. 17. D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C 전 3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20. 1. 20. 접수 제1249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64019호로 D를 상대로 위 나.항과 관련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9. 4. 지급명령을 받아 2020. 9. 23.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D와 피고가 모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D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으나 형식적으로만 어머니인 D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원래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소유권명의를 이전(명의신탁 해지)한 것에 불과할 뿐 D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D의 명의를 빌린 이유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으나 D가 원해서 해준 것’이라고 모호하게 설명하였을 뿐이다).

2) ‘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가 채무초과상태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D의 자녀(아들)인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2020. 1. 17.) 이틀 전인 2020. 1. 15.경 D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21. 5. 31.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차남임에도 장남의 문제 등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거의 모든 집안일을 책임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사해행위는 기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이 아니고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증여’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